

# 열 공급 규정

2017. 05. 01.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4
제 2조	[적 용]	4
제 3조	[열공급 구역]	4
제 4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4
제 5조	[용어의 정의]	4

## 제 2 장 수용신청과 공급계약

제 6조	[수용신청]	5
제 7조	[수용신청 자격]	6
제 8조	[공급 동의]	6
제 9조	[공급 계약]	6
제10조	[계약기간]	7
제11조	[계약의 변경]	7
제12조	[명의 변경]	7
제13조	[수용가 신청에 의한 공급계약의 폐지]	7
제14조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계약의 폐지]	7
제15조	[공급계약 폐지후의 채권, 채무등]	8

## 제 3 장 공급 및 사용

제16조	[공급 개시]	8
제17조	[공급기간 및 시간]	8
제18조	[공급조건 및 단위]	8
제19조	[공급의 정지]	9
제20조	[공급정지의 해제]	9
제21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9
제22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 중지]	10
제23조	[재수용 신청]	10

## 제 4 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24조	[공사의 시공]—————	10
제25조	[비용의 부담]—————	11
제26조	[증설수용]—————	11
제27조	[추가수용]—————	11
제28조	[재수용]—————	11
제29조	[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등의 부담]—————	11
제30조	[공사비 결정 등]—————	12
제31조	[붕인 관리]—————	12
제32조	[수급지점 및 재산한계점]—————	12

## 제 5 장 열요금

제33조	[열요금의 적용시기]—————	12
제34조	[열요금의 산정 및 조정]—————	13
제35조	[일수계산]—————	13
제36조	[계량검침]—————	13
제37조	[검침단위]—————	14
제38조	[열사용량의 산정]—————	14
제39조	[열사용량의 조정]—————	14
제40조	[계산기간]—————	14
제41조	[요금의 납부의무]—————	14
제42조	[연체료]—————	14
제43조	[요금의 청구]—————	15
제44조	[강제 징수]—————	15
제45조	[요금의 계산착오등에 대한 시정]—————	15
제46조	[보증금]—————	15
제47조	[요금의 끝수처리]—————	16

## 제 6 장 수용가 시설 및 수용가 의무

제48조	[수용가 시설기준 등]—————	16
제49조	[시설의 점검 및 보완]—————	16
제50조	[계량장치의 설치]—————	16
제51조	[계량기의 검사]—————	16
제52조	[수용가의 의무]—————	17
제53조	[사용장소의 출입 등]—————	17
제54조	[손해배상 의무]—————	17
제55조	[손해배상의 면책]—————	17
제56조	[위약처리]—————	17

## 제 7 장 안 전

제57조	[안전책임]—————	18
제58조	[통보 등]—————	18
제59조	[수용가시설의 개선]—————	18
제60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19
제61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등]—————	19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열공급 구역 내의 기업체 중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에게 열을 생산 공급할 때의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공급자와 제3조의 열공급 구역 내의 수용가에 적용한다.

### 제 3 조 [열공급 구역]

열공급 구역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 구역으로 한다.

### 제 4 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1. 공급자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공급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규정의 개선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와 수용가는 이 규정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열발전처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열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용가”라 함은 공급자로부터 생산된 열을 공급받아 열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열발전처”라 함은 보일러 및 터빈발전기 등 열발전기기를 설치하여 열을 생산하는 공급자 소유의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를 말한다.
4. “주증기관”이라 함은 열발전처에서 생산된 열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상에 설치한 열수송관과 그 부속설비로서 증기기관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증기지관” 이라 함은 열발전처에서 생산된 열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증기관에서 분기하여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열수송관과 그 부속설비로서 열수급 지점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6. “응축수 주관” 이라 함은 주증기관과 함께 매설된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한 배관을 말한다.
7. “응축수 지관” 이라 함은 수용가의 응축수 회수펌프로부터 응축수 주관 연결지점까지의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한 배관을 말한다.
8. “공급시설” 이라 함은 열발전처로 부터 열수급 지점까지의 열발전처, 주증기관, 증기지관, 응축수 주관, 응축수 지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열공급에 필요한 공급자 소유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9. “수용가시설” 이라 함은 수용가가 공급시설로 부터 열을 공급받고, 사용하기 위한 열수급 지점 이후의 열사용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말한다.
10. “열수급 지점” 이라 함은 열을 공급받고 열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공급시설과 수용가시설의 접속지점을 말한다.
11. “계량장치” 라 함은 수용가의 열 사용량을 계량하는 기기 및 그 부속장치로 공급자의 열 발생처에 설치된 원격전산계량장치와 수용가에 설치된 유량계 또는 열량계를 말한다.
12. “열(증기)” 이라 함은 공급자의 발전용보일러 및 보조보일러에서 생산되어 열발전처의 소내 소비를 제외하고 수용가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와 압력을 충족하는 과열증기 및 포화증기를 포괄하여 “열” 또는 “증기” 라 한다.

## 제 2 장 수용신청과 공급계약

### 제 6 조 [수용 신청]

1. 공급자로부터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용자가 설치할 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수용가 배치도
  - (2) 보일러실 또는 기계실 설치도 및 배관 배치도
  - (3) 밸브 스테이션 (VALVE STATION) 위치도 및 수용가 시설 개략도
  - (4) 공정도 및 설명서
2. 수용신청은 신설수용신청, 증설수용신청, 재수용신청, 추가수용신청으로 한다.
3. 신설수용신청은 공급자의 최초 열공급사업 개시전의 수용신청에 한한다.

## 제 7 조 [수용신청 자격]

1. 수용신청은 열사용장소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열사용장소의 소유자와 수용가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수용가를 구분 표시하여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열요금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수용가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가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다수의 수용가가 수용신청을 하는 경우 공급자가 인정하는 다수의 수용가를 대표하는 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제 8 조 [공급 동의]

1. 공급자는 수용가의 수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는 열공급에 동의한다.
2.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 (2) 공급시설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공급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3) 열공급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다른 수용가에 대한 열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4) 이 규정 이외의 열공급조건으로 공급요청을 한 때
  - (5) 기타의 사유로 열공급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 제 9 조 [수급 계약]

1. 수용가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을 동의 한 때에는 공급자와 수용가는 수급계약을 체결한다.
2. 수급계약은 수급계약서에 공급자와 수용가가 합의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공급자는 수용가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 (2) 분담금 또는 공사비 부담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
  - (3) 열요금 등의 체납금이 있는 경우 그 납부
  - (4) 수용가시설의 점검결과, 수용가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완

## 제 10 조 [계약기간]

1. 공급계약기간은 공급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공급계약 만료 전에 공급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이 없거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은 계약기간만료 후에도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기간은 공급자와 수용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1 조 [계약의 변경]

공급자는 공급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공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2 조 [명의 변경]

1. 매매, 임대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 명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수용가는 전(前)수용가의 공급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제9조의 열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신규 수용가는 제1항의 전(前)수용가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규 수용가가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명의변경 신청 없이 전(前)수용가의 동일 장소에서 열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에도 신규 수용가는 전(前)수용가의 공급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수용가신청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

1. 수용가가 열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희망일을 정하여 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가의 폐지 희망일에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1. 공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수용가가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계약을 폐지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아니한 수용가로서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

저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 한 날에 수급계약이 폐지된다.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중지중인 수용가가 중지신청기간이 경과되어도 재수용 신청 또는 재중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신청기간 경과 후 10일 되는 날에 수급계약을 폐지한다.

#### 제 15 조 [수급계약 폐지 후의 채권, 채무 등]

1. 열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공급자는 수급계약폐지 이후에도 이미 설치된 공급자 소유의 공급시설 또는 수용가 시설을 사용장소 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며, 수급계약이 폐지된 수용가는 공급자 소유시설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상의 변경, 시설의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

## 제 3 장 공급 및 사용

#### 제 16 조 [공급개시]

1. 공급자는 수급계약이 체결된 수용가에 대하여 공급시설 및 수용가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에 그 시설의 점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급계약서의 공급예정일에 열을 공급한다.
2.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용가에게 미리 통지한다.

#### 제 17 조 [공급기간 및 시간]

수용가에 대한 열의 공급은 기간 및 시간을 상호 협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8 조 [공급조건 및 단위]

1. 공급자는 수용가에 열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수용가에 대한 열공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공급압력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공 급 조 건	
	온 도	압 력
열(증기)	170 ℃ 이상	7 ~ 11 kg/cm <sup>2</sup>

3. 증기공급의 계량단위와 응축수회수의 계량단위는 TON 또는 Mcal로 하며, 소수점이 하 첫째자리수까지로 한다.
4. 수급자는 사용하는 열(증기) 응축수 전량을 공급자에게 회수되어야 하며, 수질은 공급자의 수질기준에 준한다.
5. 수용가는 공급자 열공급시설의 정기보수 등으로 인하여 열 공급 중단 및 공급조건 변경(압력저하 등)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6. 수용가의 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비보일러 운영은 수용가의 의무로 한다.

#### 제 19 조 [공급의 정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정지하는 사실을 정지일 7일전까지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 후에 통지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2. 수용가가 사용장소 내에 있는 공급자의 소유시설을 훼손하는 등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때
3. 공급시설 또는 수용가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
4. 수용가가 열요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2개월이상 연체하였을 때
5. 수용가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 문제발생이 예상될 때
6. 수용가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을 때

#### 제 20 조 [공급정지의 해제]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수용가가 공급계약이 폐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그 사유를 해소하고 공급자에 대한 열요금, 위약금, 손해 배상금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한다.

## 제 21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령에 의하여 열의 사용이 제한될 때
  - (2) 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공급시설의 보수, 변경 및 기타공사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 (4)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 (5) 기타 안전상 부득이할 때
2.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공급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한다.

## 제 22 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중지]

1. 수용가는 열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중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중지신청기간을 초과할 때는 신청기간만료 5일전까지 재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중지신청은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공급중지 신청일, 희망일, 중지일, 중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3 조 [재수용 신청]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이 폐지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중지된 자가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수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제22조의 사유로 재수용 신청을 할 때에는 제6조1항 각호,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4 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 제 24 조 [공사의 시공]

1. 공급시설에 관한 공사는 공급자가 시공한다.

2. 수용가시설에 관한 공사는 수용가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시설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3. 수용가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라야 한다.

#### 제 25 조 [비용의 부담]

1. 공급자의 최초 열공급사업 허가전 협정을 체결한 수용가의 신설수용에 대한 공급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용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며, 공급시설과 수용가시설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2. 수용가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 제 26 조 [증설수용]

수용가가 열사용의 증설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이미 설치한 공급시설을 증설하여 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수용신청에 의하여,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 제 27 조 [추가수용]

공급자의 최초 열공급사업 개시 후 새로이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자가 이미 설치한 공급시설 외에 별도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용신청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 제 28 조 [재수용]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공급계약의 폐지 또는 열사용의 중지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공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 제 29 조 [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등의 부담]

수용가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공급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급시설 중 수용가 소유부지내 공급자 소유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제 30 조 [공사비 결정 등]

1. 공급자가 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할 때의 공사비는 공급자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용가는 제1항의 공사비용을 공사 착공 전에 공급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설계의 변경, 재료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후 정산한다.

### 제 31 조 [봉인 관리]

1. 공급자는 공급시설 또는 수용가시설 중 유량계의 METERING PANEL 등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봉인관리한다.
2. 수용가는 공급자가 봉인관리하는 시설을 임의로 파손, 조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의 책임을 진다.

### 제 32 조 [수급지점 및 재산한계점]

1. 공급자와 수용가의 열수급이 이루어지는 수급지점은 수용가시설의 증기HEADER 인입 밸브 및 응축수 펌프의 토출 후단 Flange로 한다.
2. 열발생처로부터 수급지점 이전까지를 공급시설로 하고, 수급지점 이후를 수용가시설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공급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시설은 공급자 소유로, 수용가가 공사비를 부담한 시설은 수용가 소유로 한다.
3. 열공급의 원활한 운영과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가 공사비를 부담한 다음 각호의 시설은 공급자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공급자 소유로 할 수 있다.
  - (1) 제25조 3항,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교체, 증설, 추가된 공급시설
  - (2) 유량계

## 제 5 장 열요금

### 제 33 조 [열요금의 적용시기]

1. 열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열수급계약에 의하여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수용가가 열수급계약에 의한 공급개시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개시 예정일 5일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요금의 체계, 요금의 계산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변경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제 34 조 [열요금의 산정 및 조정]

1. 열요금의 산정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량을 별표의 열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열요금 단가는 공급자가 수용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다만, 제18조 4호 규정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응축수량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협의된 단가로 산정한다.

#### 제 35 조 [일수 계산]

1. 기본요금의 부과는 해당월의 월력일수와 관계없이 월단위로 한다.
2.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계산은 수급일수에 따른 일수계산을 한다.
  - (1) 계약량 또는 요금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 (2) 수급계약에 의해 공급이 개시되었을 경우
  - (3) 수급계약이 종결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3. 수급일수의 계산은 개시 또는 변경일을 포함하고 중지, 종결 또는 폐지일은 제외한다.
4. 일수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5. 일수계산에 의한 기본요금의 계산은 월기본요금에 수급일수를 곱하여 해당월의 월력일수로 나눈 것으로 산정한다.
6. 수급계약기간 중에 연속하여 120시간이상 열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연속 공급 중지일에 대하여 일수계산을 하여 기본요금계산에서 공제하나, 제19조(공급의 정지), 제21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기본요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제 36 조 [계량검침]

1. 열사용량 및 응축수회수량의 검침은 공급자와 수용가간에 Online으로 연결된 원격 검침시스템으로 검침하며, 일시적인 시스템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장치의 검침으로 한다.

2. 월사용량 및 응축수회수량에 대한 검침은 매월 말일(末日)을 정기검침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다.

### 제 37 조 [검침단위]

계량기의 검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 제 38 조 [열사용량의 산정]

1. 열사용량의 산정은 제36조(계량 검침)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량으로 한다.
2. 매월의 사용량은 당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에서 전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제 39 조 [열사용량의 조정]

공급자 원격전산계량장치 및 수용가 계량장치에 이상이 있거나 전원의 상실 또는 계량기의 검사기간 등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검침량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전 사용량의 평균량으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한 양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text{사용량} = \frac{\text{직전 3개월 사용실적량}}{\text{직전 3개월 실사용일수}} \times \text{대상일수}$$

단, 계절적 영향으로 평균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직전 1주일 동안의 정상 사용량을 기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 40 조 [계산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검침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한다)으로 계산한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공급계약이 폐지된 경우에는 직전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 제 41 조 [요금의 납부의무]

1. 수용가는 검침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한다) 까지 지정한 수납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수용가가 열요금(연체료를 포함한다)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지불의무 발생일” 확정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미납 열요금의 연체료(가산금)

- (2) 미납 열요금
- (3) 금월 열요금

**제 42 조 [연 체 료]**

1. 수용가가 납기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1개월 단위로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1개월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1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매월의 연체료는 제19조(공급의 정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일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한다.

**제 43 조 [요금의 청구]**

공급자는 요금청구서 (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매월 5일까지 발부하며, 납기일은 공급자와 수용가가 상호 협의한 날로 한다.

**제 44 조 [강제 징수]**

1. 수용가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공급자는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및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공급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개시하며, 수용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공급자는 제1항의 절차개시에 관한 내용을 절차 개시일 5일전까지 수용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5 조 [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시정]**

1. 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용가는 납기일 7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이의 제기로 요금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요금에서 정정하여 따로 정하는 납기일 14일전까지 별도 청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수용가가 납기 후 또는 요금납부 후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되지 않은 요금 및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정정된 청구서를 발부한다.

4.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46 조 [보 증 금]

1. 공급자는 제19조(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의 정지를 당한 일이 있는 수용가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 조건으로써 예상 월액요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등(이하 “보증증서”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예치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예치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공급계약이 폐지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제 47 조 [요금의 끝수처리]

공급자는 요금, 시설부담금 등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수용가 시설 및 수용가 의무

#### 제 48 조 [수용가의 시설기준 등]

수용가시설의 설치, 시공 및 유지, 보수 등은 관련법령에 적법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시설의 점검 및 안전]

수용가시설의 점검 및 안전점검은 수용가에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령에 준하여야 한다.

#### 제 50 조 [계량장치의 설치]

수용가시설 중 계량장치는 공급자가 설치하며, 사용시설과의 연결공사는 수용가가 시공하고, 검침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공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1 조 [계량기의 검사]

1. 공급자는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 및 책임 관리하며, 2년 단위로 정기 검교정을 하여

야 한다.

2. 수용가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량기의 오차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 공인 기관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계량기가 계량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체 또는 수리를 한다.

### 제 52 조 [수용가의 의무]

1. 수용가는 공급시설, 수용가시설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공급시설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용가는 제1항의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수용가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열과 수용가 자체 열원설비의 열을 제외하고 기타 열 사용은 하지 않는다.

### 제 53 조 [사용장소의 출입 등]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용가의 동의를 받아 수용가의 토지 또는 건물 내를 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시공, 보수 또는 순시점검을 할 때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가시설을 점검할 때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4. 제13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 제 54 조 [손해배상 의무]

1. 공급자의 열 공급 차질로 수용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수용가의 급격한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 ② 수용가가 공급자의 평균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③ 천재지변, 비상재해, 안전상 제한 등 불가항력적 사용가 발생한 경우
  - ④ 기타 수용가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수용가가 제52조 규정에 의한 수용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 및 투자비 등을 포

함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 55 조 [손해배상의 면책]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폐지하였을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4.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제 56 조 [위약처리]

1. 수용가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공급자가 결정 한다.

2. 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공급시설 또는 수용가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 (2) 이 규정에 의한 열수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였을 때에는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 (3) 수용가가 공급계약의 폐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로 인한 봉인 및 공급자가 관리하는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조의 금액을 징수한다.
    - ① 봉인 파손 : 50,000 원
    - ② 부정 사용 :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산정한 위약금

## 제 7 장 안 전

#### 제 57 조 [안전 책임]

공급자시설과 수용가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용가의 안전책임을 제29조의 규정에 준하

며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 58 조 [통보 등]

1. 공급자는 공급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용가는 수용가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용가가 수용시설의 보수, 개조 등을 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제3항의 사항 또는 수용가시설의 안전상태에 관하여 수용가의 점검상황을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 제 59 조 [수용가 시설의 개선]

공급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가시설에 대하여 개선, 철거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60 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1. 열공급과 관련한 제반문서 중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한다.
2.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 61 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의무 등]

1. 공급자는 이 규정을 인가 받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용가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수용가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공급자와 수용가 상호간에 체결한 “열공급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들은 본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열요금의 산정

(규정 제34조 제1항 관련)

1. 요금의 산정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부 과 기 준	요 금 산 정
기본요금	-	-
사용요금	사용량(TON 또는 Mcal)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초과사용요금	-	-
응축수회수 보상비	-	-
<b>열 요금</b>	<b>기본요금 + 사용요금 + 초과사용요금 - 응축수회수보상비</b>	

- (1) 사용요금단가는 수용가 열생산원가에서 절감단가를 차감하여 적용하며, 열생산원가는 매월 변동되는 부산지역 LNG단가를 연동하여 적용한다.
- (2) 사용요금단가 = (수용가 열생산원가 - 절감단가)
  - ▶ 수용가 열생산원가 = 열 1 TON 생산원단위(Nm<sup>3</sup>/열 1 Ton 또는 1 Mcal) × LNG단가
  - ▶ LNG 단가 = 매월 변동되는 부산지역 LNG단가 연동 적용
  - ▶ 절감단가 = 공급자가 수용가에 기존 열생산원가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적용
- (3) 응축수회수보상비 = 응축수는 수용가가 사용하는 열 사용량 만큼 공급자에게 전량 회수 하는 조건으로 수용가의 응축수회수 보상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기 타

- (1) 열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합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열공급신청서의 최대 신청용량(TON/HR)이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계약량이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 열 공 급 신 청 서

수 용 가 번 호				처 리 기 한	10 일
수 용 장 소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수 용 가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용 량	최 대	TON/HR		사 용 압 력	kg/cm <sup>2</sup>
	평 균	TON/HR	TON/월	공급개시요청일	년 월 일
공 급 개 시 일		년 월 일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신설  
 증설    사용  
 변경  
 재

본인은 상기 수용장소에서 귀사의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열을

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열공급을 신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조 건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 집단에너지공급설비 열공급규정의 준수를 승낙 한다.
- (2)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타 기관에 연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수용가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印 )

- ※첨부 서류 : 가. 열공급 규정 제6조 제1항의 각호 서류    각 1부  
 나. 수용장소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1부  
 다. 수용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수용가 인감증명서    1부  
 마. 기타 공급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 명 의 변경 신청서

수용가번호		처리기한	10 일
수용장소		접수일자	년 월 일
전수용가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업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용가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업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용량	최대	TON/HR	사용압력 kg/cm <sup>2</sup>
	평균	TON/HR	TON/월 공급개시요청일 년 월 일
변경사유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본인은 상기 수용 장소에서 귀사의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기 위해 열공급규정 제12조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다음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 집단에너지공급설비 열공급규정의 준수를 승낙 한다.
- (2)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타 기관에 연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전수용가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 신수용가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첨부 서류 : 가. 수용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수용가 인감증명서                                1부  
                   다. 기타 공급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열공급 중지(폐지) 신청서

수용가번호		처리기한	7 일
수용장소		접수일자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업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중지(폐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지(폐지)사유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본인은 상기 수용 장소에서 열사용 중지(폐지) 후에도 귀사와 체결한 열공급계약 중의 요금 및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오며, 위의 사유로 열사용의 중지(폐지)를 신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